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허종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73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8.

발 의 자 : 허종식 · 허성무 · 이훈기
이재관 · 김정호 · 박찬대
박정현 · 유동수 · 이연희
남인순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최근 반도체 · AI ·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, 수출입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복잡도 · 난이도가 증가 중임.

또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이후 시정명령 등 사후관리도 중요해지고 있어, 무역위원회 조치의 공정성과 투명성, 실효성을 제고하고,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 개정추진을 제안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현행법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잠정 및 시정조치 중 하나로 광고 · 홍보 행위의 중지, 정정광고를 규정하고 있으나, 시정조치의 대

상이 되는 불공정무역행위에는 광고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. 따라서, 법률 해석의 불명확성 해소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금지 조항 및 시정조치 조항에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,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제3호, 제10조제1항제3호, 제10조제3항).

나.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조사 판정 전 해당 품목의 제재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, 시정명령 시 이를 고려하라는 취지로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듣게 되어있음. 그러나, 조사 품목 중 산업통상부 단독으로 관련 영향을 검토하기에 곤란한 경우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나 근거가 부재함. 따라서 시정조치 전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을 산업통상부장관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).

다.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, 현행법은 시정조치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성을 높이고, 향후 유사행위의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. 그러나 현재 공표 명령의 요건, 절차,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. 이에 따라,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 근거를 법률상 마련하여 집행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

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3항).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중 “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”을 “거짓 또는 과장하여 표시·광고한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산업통상부장관”을 “관계 행정기관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정정표시·광고

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정정표시·광고나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)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“불공정무역행위”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2. (생략) 3. 품질 · 내용 · 제조방법 · 용도 · 수량 등(이하 “품질등”이라 한다)을 <u>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</u>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4. (생략) ② (생략)	제4조(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<u>거짓 또는 과장하여 표시 · 광고한</u> 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시정조치)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산업통상부장관의</u> 의견을 들어야 한다. 1. 2. (생략) 3. <u>정정광고</u> 4. 5. (생략) ② (생략)	제10조(시정조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 <u>관계 행정기관의 장</u>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정정표시 · 광고</u> 4.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	<u>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정정표시</u> <u>· 광고나 제1항제4호에 따른 시</u> <u>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절</u> <u>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</u> <u>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--------------------	--